



시 보



제1625호 2023. 12. 18.(월)

공 고

-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2
- 「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및 입선작 선정 공고----- 3
-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121

조 례

- 조례 제3732호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4
- 조례 제3733호 목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9
- 조례 제3734호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13
- 조례 제3735호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19
- 조례 제3736호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22
- 조례 제3737호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24
- 조례 제3738호 상위법령 등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 조례 제3739호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43
- 조례 제3740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 조례 제3741호 목포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54
- 조례 제3742호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 조례 제3743호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56
- 조례 제3744호 목포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64
- 조례 제3745호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68
- 조례 제3746호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74
- 조례 제3747호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77
- 조례 제3748호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81
- 조례 제3749호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83
- 조례 제3750호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5
- 조례 제3751호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88
- 조례 제3752호 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102
- 조례 제3753호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108
- 조례 제3754호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1
- 조례 제3755호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115
- 조례 제3756호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7
- 조례 제3757호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18
- 조례 제3758호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119

회람							
----	--	--	--	--	--	--	--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1. 목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목포시청 도시계획과(☎061-270-862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 12. 18.

목 포 시 장

■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미 집 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비재정적 집행시설		재정적 집행시설						
					1단계 (2023~2025년)		2-1단계 (2026~2027년)		2-2단계 (2028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합 계	113	242,047.7	6	5,245.4	10	83,350.0	13	66,418.0	84	87,034.3	
교통 시설	소계	96	133,510.7	6	5,245.4	4	7,754.0	10	62,899.0	76	57,612.3
	도로	80	124,928.0	6	5,245.4	2	7,204.0	9	62,832.0	63	49,646.6
	주차장	15	8,432.7	-	-	1	400.0	1	67.0	13	7,965.7
	자동차 정류장	1	150.0	-	-	1	150.0	-	-	-	-
공간 시설	소계	10	87,629.0	-	-	5	75,344.0	-	-	5	12,285.0
	녹지	1	1,276.0	-	-	-	-	-	-	1	1,276.0
	공원	5	12,400.0	-	-	3	8,400.0	-	-	2	4,000.0
	공공공지	2	7,009.0	-	-	-	-	-	-	2	7,009.0
	유원지	2	66,944.0	-	-	2	66,944.0	-	-	-	-
유통 및 공급 시설	소계	2	698.0	-	-	-	-	2	698.0	-	-
	수도 공급설비	2	698.0	-	-	-	-	2	698.0	-	-
공공 문화 체육 시설	소계	2	3,073.0	-	-	1	252.0	1	2,821.0	-	-
	공공청사	1	252.0	-	-	1	252.0	-	-	-	-
	학교	1	2,821.0	-	-	-	-	1	2,821.0	-	-
방재 시설	소계	3	17,137.0	-	-	-	-	-	-	3	17,137.0
	하천	3	17,137.0	-	-	-	-	-	-	3	17,137.0

※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시설은 연차별 계속 계획으로 수립하였음(공원, 유원지 등).
 ※ 본 단계별 집행계획 및 사업비는 추정치로 사업시행 시 변경 될 수 있음.

「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공고

「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설계공모(목포시 공고 제2023-1533호)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4조(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선작 및 입상작이 선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목 포 시 장

심사결과

구 분	업 체 명(공동응모 업체명)	보 상	비 고 (심사번호)
당선작	(주)휴먼플랜건축사사무소 (예가건축사사무소)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권	1
입상작(1)	프라임건축사사무소	보상금	9
입상작(2)	영일건축사사무소	보상금	7
입상작(3)	(주)씨드21건축사사무소	보상금	2
입상작(4)	(유)라운드건축사사무소	보상금	3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료

목포시 조례 제 3732 호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라 목포시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사청문대상자”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대상) ① 목포시장은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목포시장은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 요청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9명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회 별(의회운영위원회 제외)로 3명을 추천받아 선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8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은 인사청문 요청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9조(선서 및 위원의 질의) ①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청문대상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듣는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할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0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에 마치지 못하여 제8조제4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2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시장에게 임명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6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

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8조(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료

목포시 조례 제 3733 호

목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등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목포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포괄적인 지역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6. 장기요양 관련 종합 상담 및 교육서비스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에 대해서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목포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지원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료

목포시 조례 제 3734 호

목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 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 재활·고용, 평생교육·직업훈련, 문화·체육·여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목포시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목포시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적 사항

- 가. 추진 목표 및 방향
- 나. 연구·개발
- 다. 교육·홍보
- 라. 재원 조달 및 운용

2. 개별적 사항

- 가. 복지서비스 제공
- 나. 성년후견 지원
- 다. 가족의 일상적 양육 부담 경감 및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 라. 보호자의 일시적 미보호 사유 발생에 따른 맞춤형 일시보호 제공

3. 협력적 사항

- 가. 사고, 인권 유린, 실종 등 예방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
- 나. 복지단체 및 보호자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의 사항

- 가.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시장은 이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1항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 조사와 함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단체 등에 실태 파악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서비스 제공) 시장은 복지사업을 수행할 경우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 복지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3.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4. 발달장애인 가족의 심리상담 및 역량 강화 지원
5.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훈련기관, 일자리 제공업체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지원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7조 및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① 시장은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의 보호·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복지단체
2. 자조 단체
3. 보호자단체

② 시장은 복지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복지시설 확충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확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재활병원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일자리 창출
3. 인권신장 및 인식개선

4.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의견 청취)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발달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홍보) 시장은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하여 공무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와 관련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목포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목포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목포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행 중인 지적·자폐성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료

목포시 조례 제 3735 호

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있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이하 “시설”이라 한다)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 나.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4. “가정위탁”이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3호의 시설에 입소하였거나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정위탁된 보호대상아동
2. 자립준비청년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발굴·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지원(금융 컨설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7.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운전면허취득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호 기간 연장) 시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제7조(위임 및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도 점검)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해야 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료

목포시 조례 제 3736 호

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
2.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 청소년부모 가정 이 시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각종 지원 제도 등을 통합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 부모 가정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부모의 임신 · 출산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지원
3.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
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료

목포시 조례 제 3737 호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스토킹범죄 피해자 치료 등 회복 증진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개인정보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위법령 등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료

목포시 조례 제 3738 호

상위법령 등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행정절차법」 제52조의2”로 한다.

제2조(「목포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을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30조”로 한다.

제4조(「목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목포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 중 “경무과장”을 “주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7조(「목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조”를 “제50조”로 한다.

제8조(「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1조 및 제14조”를 삭제한다.

제9조(「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조례」의 개정)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11조(「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의 개정)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12조(「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의 개정)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13조(「목포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개정)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 「지속가능발전법」 ”을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으로 한다.

제14조(「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의 개정)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로 한다.

제15조(「목포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의 개정) 목포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 「정신보건법」 제27조”를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 「정신보건법」 제13조의2”를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의 개정)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6항”을 “법 제27조제9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을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7조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의 개정)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를 삭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수질 규칙」 제9조의”를 “규칙 제37조”로 한다.

제20조 중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을 “규칙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의 개정)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제9조”를 “제21조”로 한다.

제19조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3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8조”로 한다.

제3조 중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한다.

제20조 (「목포시 정보화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정보화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21조 (「목포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부터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75조부터 제7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부터 제97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59조, 제62조부터 제67조”로 한다.

제22조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를 “「수상

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2】

1.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민원처리에 관한 법률</u> 」 제45조 및 「 <u>지방공무원법</u> 」 제78조에 따라 목포시 (이하 “시”라 한다) 시민과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이하 생략)	제1조(목적) ----- 「 <u>행정절차법</u> 」 제52조의2 ----- ----- ----- ----- ----- ----- -----

2. 목포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u> 」 제54조제2항에 따라 목포시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이하 생략)	제1조(목적) -- 조례는 「 <u>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u> 」 제54조제2항----- ----- ----- ----- -----

3.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지방자치법</u> 」 제116조의2에 따라 목포	제1조(목적) -- 조례는 「 <u>지방자치법</u> 」 제130조-----

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 등의 자문 및 제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이하 생략)

4. 목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지원대상사업) 시장이 <u>법 제16조제3항</u> 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제6조(지원대상사업) ----- <u>법 제16조제2항</u> ----- ----- -----. 1. ~ 5. (현행과 같음)

5. 목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협의회 구성) ① ~ ③ (생략)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목포경찰서 <u>경무과</u> 장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주무 부서장-----.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로 구성된 목포시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	제13조(실무협의회) ① ----- ----- ----- ----- ----- 주무 부

회는 간사인 목포경찰서 경무과
장이 주관한다.

② ~ ④ (생략)

서장-----.

② ~ ④ (현행과 같음)

6.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하 생략)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 ----- --

7. 목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목포시 (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이하생략)	제1조(목적) ----- ----- 제50조----- -----

8.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 (위탁관리) ① (생략) ②시장은 「목포시사무의 민간	제13조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복지관 운영 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략)

-----<삭제>-----

 -----.

③ (현행과 같음)

9.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지원대상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이하생략) 1. ~ 5. (생략) 6.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7.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및 그 유족 8.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및 그 유족 9. ~ 15. (생략)	제2조(지원대상자) ----- ----- ----- 1. ~ 5. (현행과 같음) 6.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9. ~ 15. (현행과 같음)

10. 목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	제1조(목적) -----

헌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이하 생략)

「지방자치법」 제161조-----

11. 목포 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출신 문학인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건립한 목포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지방자치법」 제161조 --- ----- ----- ----- ----- ----- ----- -----

12.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요트산업의 저변확산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	제1조(목적) ----- ----- ----- 「지방자치법」 제16

법」 제144조에 따라 목포시에
서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

-----.

13.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환경 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Agenda 21)” 과 「지속가능발 전법」 및 「저탄소녹색성장 기 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목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목포시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하 생략)	제1조(목적) ----- ----- ----- 「지속가능발전기본 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
제23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 은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제3항 에 -----.	제23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 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

14.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장기기증자” 란 다른 사람의	제3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췌도, 소장 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생존 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4. (생략)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

 -----.

3.·4. (현행과 같음)

15. 목포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목포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제5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자살예방센터)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p>	<p>제6조(자살예방센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p>

16.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u>법 제27조제6항</u>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제16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u>법 제27조제9항</u>----- ----- -----.</p> <p>1.·2. (현행과 같음)</p>
<p>제17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①·② (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하생략)</p>	<p>제17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u> ----- -----</p>

17.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하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 ----- ----- <삭 제>----- ----- ----- -----.</p>
<p>제11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p>	<p>제11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p>

과절차 등) ①시장은 법 제30조 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9조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조) (이하생략)

1. 「수질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3. (생략)

제20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를 할 경우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산정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과절차 등) ①-----

----- 별지 제17호서식-----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조)

1. 규칙 제37조-----

2.·3. (현행과 같음)

제20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26조제4항-----

18. 목포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p> <p>5.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제21조----- -----.</p> <p>5. (현행과 같음)</p>

19.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설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원순환기본법」을 따른다.</p>	<p>제2조(설치) -----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8조----- -----.</p> <p>제3조(정의)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p>

20. 목포시 정보화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이하생략)	제1조(목적) ----- 「 <u>지능정보화 기본법</u> 」----- ----- ----- ----- -----

21. 목포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생략) ② 제1항 위원회의 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산업법 제88조부터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75조부터 제78조를 따른다. ③ (생략)	제3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수산업법」 제95조부터 제97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59조, 제62조부터 제67조----- ③ (현행과 같음)

22.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p> <p>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이하생략)</p> <p>4. ~ 11.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 -----.</p> <p>3.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 -----</p> <p>4. ~ 11. (현행과 같음)</p>

【별첨 3】 조례 제16조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별표 2)

수질 하수도 사용료 (제17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영제29조제1호).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m³/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른

목포시 조례 제 3739 호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포시의 인구증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축하금”이란 신생아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부모의 직계존속)가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입양아”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마친 입양아동을 말한다.
3. “영유아 보험가입 지원”이란 “시”가 셋째 이상 자녀의 영유아 보험료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아기주민등록증”이란 아기사진,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의 내용을 적어 발급해 주는 증명서를 말한다.

5. “전입 유도 우수기관·기업”이란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둔 임직원을 “시”로 전입을 유도하여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관·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인구증가정책의 추진 등)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인구 증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출산축하금 지원

2. 영·유아 보험가입 지원

3.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4. “시”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지원

5.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재정지원

6. 육아의 날 운영

7. 임산부의 날 운영

8.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및 홍보

9. 결혼축하 및 장려 지원

10. 1인가구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인구증가를 위해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3.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

5. 아이 돌보미 지원

6. 보육료 지원

7.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확충

8.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
9.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10. 입양가정 지원
11. 임산부 지원센터 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지급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지급하지 않으며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한 달(月)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전출자는 전출일이 속한 달(月)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제4조(출산축하금 지원 등)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의 대상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부모의 직계존속)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를 주소지에 출생·입양신고를 하는 가정으로 하며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24개월까지의 입양자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출생자의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위에 포함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유아 보험가입 지원”대상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부모의 직계존속)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한 가정이며, 전입자에 대해서는 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산·입양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관련 공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공휴일 제외)이내에 목포시 보건소장(이하“보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며, 보건소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공휴일 제외)이내에 [별표]에 따라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 한 후 지급한다.

⑥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지원 대상자 명단을 매월 말일까지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전출, 사망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전입신고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내에 “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시”에 2명 이상 전입한 세대
2. “시”에 소재한 대학교 재학생 중 “시”에 전입신고를 한 학생
3. 전입유도 우수 기관·기업의 임직원으로 “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경우

제7조(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 설치)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인구증가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증가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청년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경제수산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인구증가 정책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전문가, 그 밖에 인구증가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3. 협의회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일기준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협의회 간사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인구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중단)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 한 경우
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후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한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별 표)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내용 및 기준

구분	시책명	적용기준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출산장려 지 원 (제4조 관련)	출산축하금	제4조 제1항	1. 첫째아이 150만원 - 출생신고 시 일시금 지급 2. 둘째아이 250만원 - 출생신고 시 150만원, 다음 해 생일 달에 100만원 지급 3. 셋째아이 350만원 - 출생신고 시 150만원,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2년간 지급 4. 넷째아이 450만원 - 출생신고 시 150만원, 매년생일 달에 100만원씩 3년간 지급 5. 다섯째아이 이상 550만원 - 출생신고 시 150만원,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4년간 지급 ※ 쌍태아는 순위별로 각각 지급											
	영·유아 보험가입지원	제4조 제3항	셋째 이상 자녀의 영·유아 보험료 일정액											
전입축하 지 원 (제6조 관련)	전입환영 기념품	제6조 제1호	목포사랑상품권 등 전입환영기념품 지급(1회 지원)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제6조 제2호	6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급(각 회차별 1회 지원) 1. (1회) 전입신고 시 20만원 지급 2. (2회) 전입신고 이후 1년 주소 유지 시 20만원 지급 3. (3회) 전입신고 이후 2년 주소 유지 시 20만원 지급											
	전입유도 우수 기관·기업 전입지원금	제6조 제3호	전입지원금 : 목포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등 (단위 : 천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width: 60%;">지급기준(전입 인원)</th> <th style="width: 40%;">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5명 이상~10명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r> <tr> <td>10명 이상~20명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r> <tr> <td>20명 이상~30명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td> </tr> <tr> <td>30명 이상~40명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td> </tr> <tr> <td>40명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td> </tr> </tbody> </table>	지급기준(전입 인원)	지급액	5명 이상~10명 미만	1,000	10명 이상~20명 미만	2,000	20명 이상~30명 미만	3,000	30명 이상~40명 미만	4,000	40명 이상
지급기준(전입 인원)	지급액													
5명 이상~10명 미만	1,000													
10명 이상~20명 미만	2,000													
20명 이상~30명 미만	3,000													
30명 이상~40명 미만	4,000													
40명 이상	5,000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집전화	
				출산자와의 관계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집전화	
출생자	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출산자와의 관계
		본인			[]에 []아니오	
	배우자			[]에 []아니오		
	자			[]에 []아니오		
	자			[]에 []아니오		
	자			[]에 []아니오		

자체 서비스 (목포시)	[] 출산축하금 지원	순위 :	자녀 중	째
	[] 영유아 보험가입 서비스(셋째 자녀 이상)	[]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셋째 자녀 이상)		
	[]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19세이하 자녀 3명 이상)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신청 구분	
		첫만남이용권(2022.1.1. 이후 출생자)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 부모급여(현금)	1. 국외출생 여부 : []에 [] 아니오
	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2. 복수국적 여부 : []에 [] 아니오
	아동수당	[] 아동수당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국기초 []차상위 []한부모 []기타) [] 조제분유([]산모의 사망·질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기타)	
	해산급여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3명 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지역난방비 경감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 (2명 이상)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회원명 : 생년월일 : 멤버십 번호 :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회원명 : 생년월일 : 휴대전화번호 : 멤버십 번호 :	
※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	[]BC카드(은행)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에 √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에 √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를 선택(IBK기업, N농협, S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한)

급여 계좌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영아수당(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륜

목포시 조례 제 3740 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스포츠산업과, 전국체전추진단을”을 “스포츠산업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대중교통”을 “교통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중교통 전반, 버스·공항·철도교통 업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통행정과장(이하 “교통행정과장”)”을 “대중교통과장(이하 “대중교통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각각 “대중교통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관광문화교육국에 두는 과)</p> <p>① 관광문화교육국에 관광과, 관광거점도시추진단,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u>스포츠산업과</u>, <u>전국체전추진단</u>을 둔다.</p> <p>② 관광문화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5. (생략)</p> <p>6. <u>전국체전 지원, 전국체전 시설에 관한 사항</u></p>	<p>제8조(관광문화교육국에 두는 과)</p> <p>① ----- ----- ----- <u>스포츠산업과</u> 를 -----.</p> <p>②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제11조(안전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건설국에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u>교통행정과</u>, 공원녹지과를 둔다.</p> <p>②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3. (생략)</p> <p>4. 교통행정, 운수사업, 교통지도, <u>대중교통</u>, 교통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p> <p><u><신 설></u></p> <p>5. (생략)</p>	<p>제11조(안전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 ----- ----- ----- <u>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u>-----.</p> <p>②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교통시설</u>----- -----</p> <p>5. <u>대중교통 전반, 버스·공항·철도교통 업무에 관한 사항</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목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목 포 시 장 박 홍 톨

목포시 조례 제 3741 호

목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

목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742 호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존속기한)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 ----- -----.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743 호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만성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실명예방을 위한 백내장 수술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백내장 수술”이란 혼탁이 생긴 수정체를 흡인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여 시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3. “의료비”란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4. “청구자”란 별지 제1호서식 의료비 지원신청서의 신청인 또는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필요 소견을 받은 사람 또는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의료비
3. 통원진료비
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제5조(비용의 부담) 시장은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받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결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단, 90일이 경과 시 지원결정 통보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7조(의료비 지급) ① 수술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 의료비 지원신청서의 신청인 또는 대상자는 퇴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료비 지원금액(제5조 관련)

구 분	지원금액(1회 기준)
무릎인공관절 수술	(한쪽무릎) 본인부담금 120만원 한도 (양측무릎) 본인부담금 240만원 한도
백내장 수술	(한쪽눈) 본인부담금 20만원 한도 (양쪽눈) 본인부담금 40만원 한도

※ 동일 부위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함.

의료비 지원 신청서

(무릎인공관절 수술 / 백내장 수술)

신청인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택)	(휴대폰)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연락처	(주택)	(휴대폰)		
	진단명			수술예정 의료기관명	
				수술예정 의료기관 전화번호	
비 고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확인사항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 등의 지원 여부		<input type="checkbox"/> 받음 <input type="checkbox"/> 안 받음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_____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1. 정형외과 또는 안과 전문의 발행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 서류를 모두 첨부)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계층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목포시보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강정보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상담, 의료비 지원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연구·통계·홍보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건복지부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및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사업 지원 여부 확인	1년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상담, 의료비 지원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귀하는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 민감정보처리에 관한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건강정보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상담, 의료비 지원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연구·통계·홍보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 성명 년 월 일
(서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 시 서명 또는 인)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주민등록표 등 · 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2. 이용기관의 명칭 : 목포시보건소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함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의료비 지원 결정 통보서
(무릎인공관절 수술 / 백내장 수술)

지 원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연락처	(주택)	(휴대폰)	
	진단명			

상기인은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진행 후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비 지원 내용

지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input type="checkbox"/> 백내장 수술
지원범위	급여분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지원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 통원진료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직인생략

- ※ 지원결정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수술하여야 함.
- ※ 수술 후 별지 제1호서식 의료비 지원 신청서의 신청인 또는 대상자는 퇴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함.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수술 구분	<input type="checkbox"/> 무릎인공관절 수술 <input type="checkbox"/> 백내장 수술 ※ 해당란에 √표기			
수술 부위	<input type="checkbox"/> 왼쪽 <input type="checkbox"/> 오른쪽 <input type="checkbox"/> 양쪽 ※ 해당란에 √표기			
지원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연락처	(주택)	(휴대폰)	
의료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수술일자	년	월	일
	입원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청구정보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청구금액 (단위 : 원)	_____ 원		
상기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 구 자 (서명 또는 인)</p>				
목 포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목포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른

목포시 조례 제 3744 호

목포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 복지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 진흥사업)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발전을 위한 사업
2. 전통문화 및 지역 문화예술 발굴·보존사업
3. 문화예술 행사 개최
4.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5. 문화예술 교류행사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2. 예술인의 창작활동·공간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신진·청년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5.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중복지원, 일회성 사업, 단순행사 등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실적보고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조금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시책마련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

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문화예술 공연 및 용역 관련 계약) ① 시장은 문화예술 공연 및 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연시작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공연 및 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목포시의회 시의원
2.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대표
3.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예술인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 중 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정한다.

제15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

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단체·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른

목포시 조례 제 3745 호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내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하여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목포시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목포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

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문화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지역서점 현황 및 실태조사
7.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영악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지역서점 운영 및 현황 평가에 관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저자 초청,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공연 등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지원
6.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 · 운영
8. 각종 전시, 공연 등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 조성
9.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10. 지역서점 바로대출제(시민이 희망하는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바로 빌리고 반납하는 제도) 등 시행
11.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포시민이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도서를 읽고 목포시 운영 도서관에 제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책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역서점 도서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계약을 우선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서점 인증)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서점업 등록 업체
2. 사용면적의 10분의 5이상 오프라인 방문매장을 운영하며 도서를 구비하여 판매하는 서점
3. 목포시에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설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2개 이상의 지사 및 지점을 둔 대기업체 서점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인증서점에 대하여 제6조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의해 인증 받은 지역서점의 경우 제1항의 인증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목포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목포시의회 의원 3명
2. 도서관 또는 독서문화 업무 담당 국장 1명
3. 대학의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1명
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2명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6. 그 밖에 사회적 독서 관련 전문성이 풍부한 외지인 3명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역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목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홍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따라 등록한 목포시 지역서점은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등록된 지역서점으로 본다.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륜

목포시 조례 제 3746 호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 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지정으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 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747 호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노동안전 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목포시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목포시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노동조건 개선
3. 노동자에게 사업장의 노동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4. 노동안전 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3.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정책개발
2. 사업주나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3. 노동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자체 점검 지원 및 지도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노동 인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2. 토목 및 건설 현장

3.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 유사 형태 노동자 및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노동자

4. 청소, 상·하수 관리 등 공공부문의 위탁·대행 위험 사업장

5. 외국인 이주 노동자

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

7. 그 밖에 산업재해 위험이 커 노동안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동자나 노동 현장

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 우수 사업장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노동안전 우수 사업장 및 노동자 표창

2.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사업장 또는 노동 현장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안전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1. 노동안전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노동안전 지킴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륜

목포시 조례 제 3748 호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 경영 활동을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한다.
2. “중소기업”이란 목포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중소기업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및 지원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진단, 전략 수립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소기업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749 호

목포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 검사 등)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품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① 시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종사자, 시 소재 단체 등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정보공개)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전담기구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영 또는 공공기관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제10조(업무협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750 호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제로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건강증진 및 탄소제로화의 지속적인 실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례에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개인이나 단체 등이 목포시 관내에서 조깅 및 산책 건강증진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탄소제로화 활동의 지속적인 실천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한다.

1.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다회용 봉투 또는 목포시의 종량제 봉투에 담은 활동을 말한다.
2.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이란 목포시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은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탄쓰담걷기”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탄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탄쓰담걷기의 날」로 운영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탄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목포시 탄쓰담 걷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탄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탄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탄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탄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탄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
2. 탄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탄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연환경보호와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탄쓰담 걷기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탄쓰담걷기에 필요한 청소장비 지원 및 사후관리
2. 청소도구 및 종량제 봉투를 보관하는 자율청소함 등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탄쓰담걷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인센티브 제공) ① 시장은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다.

1. 쓰레기 수거를 인증받은 경우
2. 사업의 홍보 및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자발적인 탄쓰담걷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 단체, 참여자에 대한 시상
2. 참여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실적 확인서 발급(단, 자원봉사활동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인센티브 제공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인센티브 사용 등) ① 참여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교환
2. 탄쓰담걷기 앱 또는 시장이 제공하는 기념품으로 교환
3. 목포시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② 인센티브는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의 사용을 중지하고 제공된 인센티브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목표걸음 수를 부정하게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목표 쓰레기량 수거를 부정하게 인증받은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획득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751 호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이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써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은 그에 부속된 음향, 조명, 체육기자재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광고·게시·공연·관람·그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자"는 일정 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는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는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는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운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수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단체"는 특정 단체 또는 같은 목적으로 하루 기준 20명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동

시에 사용하거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기본료"는 기본사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는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11. "성인"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노인은 경노우대 대상으로 한다.

12. "군인"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13. "체육경기"는 공인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는 본 조항 외의 경기 및 행사 등을 말한다.

14.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운영 할 때 에는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알려야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시설 종류별 사용료, 이용종류 및 이용방법

3.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④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전항의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휴관일)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만, 전용신청이 있거나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추석날(연휴 포함)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의해 사용 3개월 전부터 7일 이내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사용전일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경조행사
2.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시의 보조·후원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행사·경기(사용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자가 우선한다)
5.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시 등 행사

제10조(사용자의 부대시설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료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수익 목적 행사 등)
4. 허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5조에서 규정한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제13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하 계	동 계	비 고
조 기	05:00~08:00	06:00~09:00	
주 간	08:00~19:00	09:00~18:00	
야 간	19:00~23:00	18:00~23:00	

②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1항의 야간 사용시간은 조명시설이 설치된 체육시설에 한한다.

④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또는 불가항력으로 연기 되었을 때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 "연습", "방송", "부속시설", "상행위", "중계"로 구분하여 별표 2 부터 별표 6 까지와 같다. 다만, 규정 외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연습사용료를 징수 할 때에는 각 시설별로 자동발매기 및 수동매표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행사)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① 전용자는 사용료 전액을 전용일 3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전용일 3일 미만을 남겨두고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을 연간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월 사용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습사용자는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야간 계속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체육 이외의 행사 및 연습사용하는 때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초과 시간당 :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2. 초과 게임당 :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④ 추가사용료 및 중계방송·상업(광고 등) 기타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사용 후 다음날 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⑤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사용료 감면)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은 별표 7과 같다.

제17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연습사용권은 미사용의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배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

- 가. 사용개시 7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 나. 사용개시 2~6일 전 취소 : 사용료의 100분의 90
 - 다. 사용개시 당일 취소 : 사용료 반환 없음
2. 사용 예정자 또는 사용·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 가. 사용개시 7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 나. 사용개시 2~6일 전 취소 : 사용료의 100분의 90
 - 다. 사용개시 당일 취소 : 사용료 반환 없음
3.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의 양도 금지 등) ①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장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자의 배상)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손해에 대하여는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관람료) ①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초청장, 초대권 제외)을 발행하는 경우 전용 사용료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다만, 관람권수입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체육행사,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에 있어서는 관람권 매표액에서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수입액의 10퍼센트를 사용료로 한다.
 2. 프로경기를 포함한 일반행사에는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수입액의 20퍼센트를 사용료로 한다.
 3. 초대권(초청장)은 전체관람권의 100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한다. 다만, 시민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관람권은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전용자 부담으로 발행한다.

제21조(대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연습권은 체육시설의 각 대표소 및 자동발매기를 통하여 대표한다. 다만, 전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및 입장권의 예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대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도 사전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 판매 등 검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시장은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체육시설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안전요원)없이 입장하는 자
5. 전염성 질환자 및 만취된 자

제23조(관리 위탁) ① 시장은 체육시설(공공부지 및 공원 내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별 전부를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제24조(수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1. 수탁자의 적격성,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2. 재정운영의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조정능력 등

제2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설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부주의·태만·과실 등으로 인한 화재·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26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실외에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제2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하는 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③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요원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강사, 안전요원, 자원봉사자 등의 운영요원을 위촉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체육지도자가 체육시설 내에서 강습을 하는 경우 수입에 대한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위탁계약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1호 및 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부터 1년간 위탁운영

에 참여할 수 없다.

제31조(회원제 운영) ①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객들에게 셔틀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목포실내체육관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목포실내체육관 파크골프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유달시립정구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유달시립테니스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유달검도체육관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유달게이트볼구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목포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목포시 옥암동 산 256-1번지
·부주산 테니스장	목포시 옥암동 산 271-1번지
·목포실내체육관 궁도장	목포시 양을로 397번길 90(상동)
·부주산 축구장	목포시 옥암동 산 17번지
·부주산 족구장	목포시 옥암동 산 12-1번지
·부주산 산악자전거경기장	목포시 옥암동 산 26-1번지
·영산호 카누경기장	목포시 남악로 22-5(옥암동)
·부주산 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목포시 부주로 132-12(옥암동)
·부주산 국민체육센터	목포시 부주로 312(옥암동)
·목포 야구장	목포시 대양동 1262번지
·목포 리틀 야구장	목포시 옥암동 1375번지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제1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시설별	사용 시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 고
		평일	토·공 휴일	평일	토·공 휴일	
목포실내 체육관	1일	90,000	110,000	180,000	200,000	야간사용 5할 가산
실내수영장	1일	200,000	250,000	250,000	300,000	
다이빙장	1일	100,000	150,000	150,000	200,000	
정구장, 테니스장 (코트당)	1일	12,000	18,000	18,000	23,000	월 전용 사용료는 20일분 평일요금 적용, 야간사용 5할 가산
목포시궁도장	1회 4시간	20,000	30,000	40,000	60,000	1인당 1사대 주간

※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시간 1시간당 해당 전용료의 20%를 가산한다.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제1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기준	개 인			단 체			비 고	
		어른	청소년 군인	경노·어린이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수급자 전라남도지사 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어른	청소년 군인	경노·어린이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수급자 전라남도지사 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목포실내 체육관	1회	1,300	1,000	900	1,000	800	700		
실 내 수영장	일권	2,500	2,000	1,500	2,000	1,500	1,000	1일 2시간	
	월회원	45,000	35,000	25,000					
	월강습	10,000원 적용							
다이빙장	2시간 기준	5,000	4,000	3,000	4,000	3,000	2,000		
정구장 테니스장	일권	주간	2,000	1,500	1,000	1,500	1,200	800	1일 3시간
		야간	주간 사용료에 5할 가산						
	월 회원	30,000	22,500	10,000					
	월 강습	70,000							
부주산 국제 파크골프장	4시간 기준	4,000	3,000	2,000	3,000	2,500	2,000	목포 시민 1일 4시간 무료 이용 사용료 부과	
부주산 국제 클럽맨션	4시간 기준	5,000	4,500	4,000	4,000	3,500	3,000		
유달검도 체육관	월회원	100,000원 적용							

※ 테니스장 월회원은 주간금액 × 15일을 기준으로 하였음.

[별표 4]

체육시설 중계방송료 (제1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중계방송		녹화방송		영화촬영
	TV	라디오	TV	라디오	
목포실내체육관	40,000	30,000	20,000	15,000	TV중계 방송료와동일
실내수영장					

[별표 5]

체육시설 부속시설 사용료 (제13조 관련)

구 분	전 광 판	라이트(조명)	음향시설
목포실내체육관	10,000원+실제사용	실제사용전기요금+(전기검침 기본료×1/30×사용일)	5,000원 × 마이크대수
실내수영장	실제사용전기요금+(전기검침기 본료×1/30×사용일)		
부주산테니스장	없 음	실제사용전기요금+(전기검침 기본료×1/30×사용일)	5,000원 × 마이크대수

구 분	전기사용료	냉난방사용료
목포실내체육관	전기검침기본료 +	실제 전기사용료 및 유류대
실내수영장	실제 전기요금	

[별표 6]

체육시설 외부광고 등 (제1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애드 별론	선 전 광 고 게시	비고
목포실내 체육관	1일 1개 5,000	소형(10m미만×1.3m) ◦ 5일이내 50,000 1일초과 5,000가산 연간 200,000 중형(20m미만×1.3m) ◦ 5일이내 70,000 1일초과 7,000가산 연간 350,000	판매 수입액의 2할
실 내 수영장	1일 추가 3,000	대형(30m미만×1.3m) ◦ 5일이내 100,000 1일초과 10,000가산 연간 1,000,000	

사용료 감면 (제16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 고
전 용 사 용 료	1. 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훈련	80%	
	3.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어린이, 군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80%	
	4.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체육행사	80%	
	5. 시의 보조, 후원,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80%	
	6.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	80%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80%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80%	
	9.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	80%	
	1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80%	
연 습 사 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구 분		감 면 율 (할인율)	비 고
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보조자 1인을 포함한다.	50%	
	9. 「목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한 헌혈증서를 소지한 사람	10%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0%	

※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한다.

※ 사용료 감면은 신청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목 포 시 장 박 흥 룰

목포시 조례 제 3752 호

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여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위해환경 요소를 관리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해체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학교 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제1호의 공사장 중 교육 환경 보호구역의 절대보호 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주변 공사장의 범위는 통학로 여건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제1호의 공사장 중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사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을 말한다.

가. 공사장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

외한다.

나.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4. “건축관계자”라 함은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5. “공사장 환경”이라 함은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으로부터 인접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6.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7. “중·대형 공사 차량”이라 함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1톤 이상 적재량의 트럭과 건설 중장비를 말한다.

8. “통학로”라 함은 어린이, 학생이 자택에서 학교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9. “통학시간”이라 함은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10. “절대보호구역”이라 함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11. “상대보호구역”이라 함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2. “주택건설공사”라 함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공사장 안전관리) ①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건축법」 및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또는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2조제2호의 학교 주변 공사장과 같은 조 제3호

의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해체허가 및 착공신고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의 개요(건축개요 및 공사장, 주변 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 위치, 통행로 또는 통학로 표기한 위치도)

2.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계획(공사장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표지판, 안내판, 보차도 분리시설, 낙하물 방지시설, 경보장치의 설치 위치 및 관리 계획)

3.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 중 통행로 또는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해당 사항이 있는 때에만 작성한다)

나.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다. 통학시간 신호원과 안전요원 배치 계획

라. 중·대형 공사 차량 운행 계획 (운행 일정, 운행 동선, 주정차 방법 등)

4. 안전교육계획(공사장 내 노무자 등 직원 및 공사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계획)

5. 비상시 긴급조치계획(비상사태에 대비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해당 학교장 또는 아파트단지 관리 주체 등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가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의 생활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의 변경,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매일 점검 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한 주택건설 공사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3항의 안전관리 계획서상 교통 분야는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서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목포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중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다만, 교통분야의 위원은 목포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한다.

⑤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가 제출되는 경우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해당 공사장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자문을 신청한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상정 안건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학교 주변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 중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의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또는 인근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관계자는 시민협의체와 공사장 주변의 환경관리 및 안전 확보, 학생·보행자의 교통안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민협의체는 건축관계자와 시민 등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장은 시민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장은 시민협의체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의 제공, 의견 중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① 시공자는 공사장 내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파손 또는 찢어짐, 기울어짐 등이 발생하여 주변의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보수·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시장은 재건축 등 대규모 석면 제거작업 시행 시 주변 초·중·고등학교(석면 비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유아, 청소년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공자는 토사 등이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되어 통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 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④ 시장은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공도로(보도 및 차도)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는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9조(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 ① 시장은 학교 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공사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여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공사장에 대하여 「건축법」 및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753 호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연석(경계석)·방호울타리, 노면표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도와 분리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및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보도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이하 “보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여건, 교통량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2. 보도의 설치 및 정비·보수 관리
3.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4. 그 밖에 보도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보도정비계획을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도공사의 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 착공 전에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보도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및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간별·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도공사는 긴급하게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진할 수 있다.

제6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①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는 등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이 다른 공사 등의 행위로 인해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 또는 책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활용 자재 또는 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 자재는 목포시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수요가 없는 경우 목포시 산하, 기관, 학교 및 군부대, 공공주택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목 포 시 장 박 흥 톨

목포시 조례 제 3754 호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현수막의 표시 방법) ①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제8호에 따라 시장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지정계시대 이용 현수막의 표시 방법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표시내용
2. 규격, 색상, 글씨크기 등 디자인
3. 게시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설치하여야 한다.

1. 영 제35조의2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설치하여야 한다.
2.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는 각 정당별로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행정동별 2개 이하로 표시·설치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정당현수막의 표시기간이 1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체 철거하여야 한다.
4. 특정인을 혐오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설치한 정당현수막에 대하여 법 제10조 및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정당현수막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신 설></p>	<p>제19조의2(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u>「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제8호에 따라 시장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지정계시대 이용 현수막의 표시방법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시내용 2. 규격, 색상, 글씨크기 등 디자인 3. 게시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19조의3(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35조의2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설치하여야 한다. 2.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는 각 정당별로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행정동별 2개이하로 표시·설치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정당현수막의 표시
기간이 1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체 철거하여야 한다.

4. 특정인을 혐오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위
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설치한 정당현수막
에 대하여 법 제10조 및 법 제
10조의2에 따라 정당현수막을 제거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755 호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제9조의3(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과 해제,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9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u></p>
<p><신 설></p>	<p><u>제9조의3(보행우선구역의 지정)</u></p> <p><u>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u></p> <p><u>②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과 해제,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756 호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필요한”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에서 위임된 사항” 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차령) 택시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택시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시 차령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택시 차령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별표 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3항에 따른 택시에도 적용한다.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릉

목포시 조례 제 3757 호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3212호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목 포 시 장 박 흥 톨

목포시 조례 제 3758 호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특수 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u>“용달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화물자동차 또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u></p> <p>3. (생 략)</p> <p>제3조(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2의 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에 따른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생 략)</p> <p>2. <u>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제3조(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특수 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u></p>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공람·공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에 대하여 공고하오니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2. 18.

목 포 시 장

1. 주요내용

- 가. 공고명: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 나. 관계도서: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요약본 게재

2.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개요

- 가. 공간적 범위: 목포시 행정구역 전체(112.49km²)
-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2년
 - 목표연도: 단기 2027년, 중장기 2032년
- 다. 주요내용: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개요, 비전 및 전략, 가이드라인, 실행계획 등

3.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 가. 제출기한: 2023. 12. 18~ 12. 26.(공람공고 기간내)
- 나.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jwithme@korea.kr)로 서식 첨부 전송

4.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 도시디자인과(061-270-8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목포시 도시디자인과
(jwithm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2023. 12. 18. ~ 12. 26.

○ 의견요지:

○ 의견내용:

○ 의견요지:				
○ 의견내용:				
의견 제출자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